

# 당헌 개정안 공고

제7차 당무위원회회의(2021.12.30.)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당헌 제108조(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)에 따라, 아래와 같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함

< 아 래 >

## □ 당헌 개정안

현행	개정(案)
<신설>	부칙 <2020.0.00, 제0호> 제1조(시행일)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)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산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. 제3조(위임)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

